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 107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 구 지 방 법 원 포 항 지 원

판 결

사건 2020고단10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이아람(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B A 결혼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를 훼손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성기 노출 자위 동영상, "저것 봐주세요", "동영상보고 할래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7. 19:46경부터 22:4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 자에게 성기 노출 자위 동영상, 성기 사진, "오늘 사정해도 되요", "저 좆 보아 주세요.", "나랑 섹스해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입원확인서, 페이스북 캡처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C 게시물, 의무기록 사본
-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나이어린 미성년 여성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큼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볼 수 있고, 성도착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08년도에 업무방해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나.와 제2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이준영